

파주시동·리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조리면 죽원리의 “죽”자가 죽음을 연상케하는 불길한 발음이라하여 해당주민들이 명칭 사용을 꺼리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원리(大院里)로 리의 명칭을 변경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별표 조리면 란의 “죽원1리”를 “대원1리”로, “죽원2리”를 “대원2리”로 “죽원3리”를 “대원3리”로 “리”의 명칭 변경(안 제4조 별표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“리”의 명칭에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“죽”자가 들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동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- “리”의 명칭 변경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적합성에도 문제점이 없음.

지방자치법

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부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